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태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조태용・김기현・김상훈

김석기 · 김태흠 · 신원식

이주환 · 정진석 · 조수진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. 그러나 「항공법」은 폐지(2017. 3. 30)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,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.

이에 제·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「항공법」에서 「항공안전법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"「항공법」"을"「항공안전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테러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	1
또는 외국 정부(외국 지방자	
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	
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	
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)의	
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	
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	
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	
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	
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항공기(<u>「항공법」</u> 제2조	나 <u>「항공안전법」</u>
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.	
이하 이 목에서 같다)와	
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	
1) ~ 3) (생 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
다. ~ 마. (생 략)	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